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128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9-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3-15



밥스토랑

밥 스토 랑

정 보 공 개 서

(주)바스토테크놀로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바스토테크놀로지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2-2054-8770

F A X : 02-2054-878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밥스토랑 가맹사업부 / 02-2054-8770

사무소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016, 1017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홈페이지 : www.bobstr.co.kr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밥스토랑)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밥스토랑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바스토테크놀로지스			
사용 브랜드	주 소			
밥스토랑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016, 1017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1.06.	2023.01.08.	윤정아	02-2054-8770	02-2054-8781
법인등록번호	110111-8522248	사업자등록번호	790-88-0263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	윤정아	밥스토랑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016, 1017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윤정아	02-2054-8770	02-2054-8781
이사	최환	밥스토랑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016, 1017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윤정아	02-2054-8770	02-2054-8781
이사	이종환	밥스토랑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016, 1017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윤정아	02-2054-8770	02-2054-878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인피니티벤처스(주)	밥스토랑, 선넘는떡볶이	2023.3.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8층(역삼동, 태왕빌딩)	송준혁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밥스토랑	
상 호	밥스토랑 OO 점	
상표/서비스표	밥스토랑	상표 등록번호 제 4017547900000 호 (2021.07.21)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5,728,804	2,570,287	3,158,517	8,042,070	189,851	180,742

당사는 2023년에 설립하였습니다.

나. 당사의 최근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와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업체/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윤정아	대표	2023.01.~현재	대표	(주)바스토테크놀로지스/ 대표
	최환	이사	2023.01.~현재	이사	(주)바스토테크놀로지스/ 이사
	이종환	이사	2023.01.~현재	이사	(주)바스토테크놀로지스/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	1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바스토 테크놀로지 스	가맹사업 경영	2023.03 ~	선넘는 떡볶이 (등록번호:20211578) 이라는 분식 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or 등록 여부(일자)	출원번호 or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밥스토랑	상표 서비스표	2020-06-15	출원번호 4020200101071	인피니티 벤처스(주)	2031-07-21
		2021-07-21	등록번호 4017547900000		

- ▶ 상기 지식재산권은 가맹본부가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기 상표와 서비스표는 귀하가 당사의 승인 하에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입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밥스토랑] 가맹사업 현황

1. [밥스토랑]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0년 9월

2. [밥스토랑]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피니티벤처스(주)	밥스토랑	송준혁	2020년 09월 21년 09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8, 8층(슈페리어타워)
인피니티벤처스(주)	밥스토랑	송준혁	2021년 09월 ~ 2023년 03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8층(역삼동, 태왕빌딩)
(주)바스토테크놀로지스	밥스토랑	윤정아	2023년 03월 ~ 현재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016, 1017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3. [밥스토랑]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밥스토랑	기타외식	전류, 피자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밥스토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44	44	-	158	158	-	428	428	-
서 울	7	7	-	23	23	-	48	48	-
부 산	3	3	-	5	5	-	10	10	-
대 구	2	2	-	3	3	-	12	12	-
인 천	3	3	-	8	8	-	20	20	-
광 주	-	-	-	3	3	-	5	5	-
대 전	1	1	-	5	5	-	18	18	-
울 산	-	-	-	1	1	-	4	4	-
세 종	-	-	-	2	2	-	3	3	-
경 기	9	9	-	54	54	-	155	155	-
강 원	-	-	-	2	2	-	21	21	-
충 북	-	-	-	6	6	-	21	21	-
충 남	1	1	-	11	11	-	42	42	-
전 북	-	-	-	1	1	-	5	5	-
전 남	-	-	-	4	4	-	5	5	-
경 북	1	1	-	7	7	-	23	23	-
경 남	17	17	-	21	21	-	30	30	-
제 주	-	-	-	2	2	-	6	6	-

5. 최근 3년간 [밥스토랑]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6	19	-	1	-	44
2022	44	117	-	3	2	158
2023	158	274	-	4	6	428

6. [밥스토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주)바스토테 크놀로지스	선넘는 떡볶이	202111578	분식	0/0	0/0	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산정대상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428	184	9,590	-	46,517	-	209	-	
서울	48	17	12,040	-	21,343	-	3,307	-	
부산	10	4	4,968	-	8,218	-	986	-	
대구	12	5	11,089	-	21,190	-	1,463	-	
인천	20	14	9,793	-	27,921	-	942	-	
광주	5	4	13,876	-	33,792	-	2,047	-	
대전	18	8	8,100	-	23,815	-	3,375	-	
울산	4	2	-	-	-	-	-	-	5곳 미만
세종	3	1	-	-	-	-	-	-	5곳 미만
경기	155	68	8,434	-	21,975	-	209	-	
강원	21	8	18,206	-	46,517	-	2,481	-	
충북	21	12	8,568	-	14,109	-	3,924	-	
충남	42	19	8,965	-	28,370	-	2,040	-	
전북	5	3	7,985	-	15,475	-	2,056	-	
전남	5	2	6,636	-	9,256	-	4,016	-	
경북	23	11	11,462	-	23,669	-	3,432	-	
경남	30	6	7,139	-	16,430	-	598	-	
제주	6	-	-	-	-	-	-	-	

[밥스토랑]은 스크린골프장 등의 샵인샵 브랜드로서 가맹본부에서 통제하는 포스를 사용

하지 않아, 각 가맹점의 정확한 매출액과 면적을 알 수 없으며, 또한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가맹점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며, 2023년에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추정한 매출액입니다. 총 산출 매장은 실제 428개가 아닌 184개임을 알려드립니다.

8. [밥스토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428	10개월 (31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관리 지역	상호 / 명칭	주 소		
전국	모노C&C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35, 10층 1009호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원호	010-6300-3346	161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2.08.01~2024.12.3	○	○	X
전국	한스토랑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최충의	010-7626-2222	193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2.08.01~2024.12.21	○	○	X
전국	트레준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21길 31, 201호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장호준	010-3129-4063	68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01.01~2024.12.31	○	○	X
전국	(주)이오스	경남 김해시 봉황대안길 34-2, 1층(봉황동)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박수훈	010-9428-1515	14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09.01~2024.12.31	○	○	X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계	비공개	비공개	247,730	247,730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각 지점 및 인터넷 banking	1588-1111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밥스토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기타 기본공사 외 추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가. 최초 가맹금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최초 가맹비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교육비	0	"	교육 시작 3일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2,000]				

나. 보증금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최초 가맹비	2,000
최초 교육비	0
합계	[2,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1,170	234			16.5㎡(5평)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해당없음	-	-	-	-	-
사인물	협력업체	85	-	-	-	-
주방기기 (필수설비)	당사 지원	-	-	-	-	-
집기류	해당없음	-	-	-	-	-
초도물품 등	협력업체	1,085		초도물품 발주시	반환안됨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의 [밥스토랑] 브랜드는 샵인샵 브랜드로서 귀하의 점포에 입점함으로 입지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최초 개설편육 및 필요시 서비스 보수교육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식품위생법 제 40 조에 의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종사시켜서는 안됨
종업원	필요시 입문 및 서비스 보수 교육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및 품질 및 성능이 인정된 물품과 설비 등이 필요하고, 사정에 따라 부득이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8. 광고 및 판촉 활동”] 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 사	없음				
광고 분담금	당 사	상품광고 50%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 시 반환 안됨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분담금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 판촉비의 일부를 가맹점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판촉 분담금	당 사	판촉 50%	분담금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 후 1년 이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판촉행사 집행 시 반환 안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협력업체	교체실비	간판 등 변경 이전		간판 변경 후 반환 안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해당 없음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X 연[20]%	지급기일 익일부터	후불로 반환 없음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 방식에 따른 혜택 부여 등으로 상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은 일정비율로 청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가맹점 운영 중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특별교육에 한하여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분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필요 시 부담분의 일부를 가맹점 (판촉)지원비로 사용합니다.

물품 발주 및 미수금 총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중 동등액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수금 또는 연체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발주 차단 및 계약 갱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 또는 연체로 말미암아 발주 차단을 방지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에 별도 조치(계약이행보증금의 증액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의 설정)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2023)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라.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 지위에 따른 책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며,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통제를 받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외관상 가맹본부와 동일한 사업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법률상 독립된 사업주체이기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세무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가맹점 영업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따라서 위임과 대리, 사용자와 피용자, 동업자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고분담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물품 공급에 따른 미납과 연체 등에 의한 발주차단,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의 갱신거절과 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당사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이외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에 다른 요인이 경합되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부분 만큼 책임이 경감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은 당사에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비** 및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8. 가맹점운영권의 매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밥스토랑]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 ② [밥스토랑]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밥스토랑]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③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④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 ~ 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과 명성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밥스토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 [밥스토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는 대가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다) 당사가 [밥스토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명성과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과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운영 방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고,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메뉴를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별지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외에는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만 19세미만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별지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물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브랜드인 [밥스토랑]은 shop-in-shop 형태의 매장으로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별도의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실내 체육업(스크린 골프 및 야구) 등에서 각종 전류, 피자류 등을 판매업으로 하는 가맹사업	밥스토랑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밥스토랑]은 shop-in-shop 형태의 매장으로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별도의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밥스토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운영 후 직영점을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2] 년이며, 이후 자동갱신 또는 재계약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 일부터 [1] 년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사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상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연체, 정기 납입경비, 채무불이행의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개점 준비완료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가맹본부의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규정한 가맹점 운영의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바.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인지 및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서 작성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작성한 날 또는 수정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당해 계약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승인조건은 아래 별도 기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 사

가맹점 양도양수 시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가맹점을 양수하면서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으로 체결하고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합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능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밥스토랑]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실내 체육업종 등에서 각종 전류 및 피자류 등을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외식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7 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또는 담당 슈퍼바이저)에 통지하시고, 휴업일로부터 3 일전에 이를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의 면적과 유동 인구 및 방문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점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가맹본부인 당사는 기업광고와 '제품 등' 광고 등을 총괄하며, 경영적 판단과 결정으로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판촉 행사의 시행, 비용 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브랜드 및	광고·판촉비의	광고·판촉비의	광고 계획 공고 →	대중매체 광고

광고/판촉 행사	상품광고	50%	50%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행사 (전국행사)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 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판촉비의 50%	광고·판촉비의 50%		
	가맹점모집광고	광고·판촉비의 100%	.		
판촉 행사	전국적인 판촉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팜플렛·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맹점별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가맹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

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하기 20일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5조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2,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
- ③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약 **[4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 ·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9~1(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간판, 별도공사 등 제외)**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점포의 면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숙고기간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자율적 해결 원칙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조기 안정화 자금 지원	가맹점 오픈시 초기 자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지원	전매장	가맹계약 기간	약400만원 (가맹비,교육비,메뉴판,포스터)
				조리설비 (냉동고, 인덕션, 오븐) 단,매출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매출 상승 경영지원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전매장	가맹계약 기간	수발주 어플제공, 홍보영상콘텐츠제고 및 조리 등 온라인 강의 제공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특별교육은 개업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1일 (현장교육)	200	-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하는 금액임
양수 교육	1일 (현장교육)		
특별 교육	필요 시 산정	교육실시 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 통상 실비 수준	추정금액 사전고지

운영교육과 특별교육은 개업이후 교육으로 최소시간이나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가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 | | |
|--------------------------|-----|
| 1. 재 무 제 표 | 별-1 |
| 2. 메뉴 가격표 | 별-2 |
| 3. 가맹점 순회 점검표 | 별-3 |
| 4.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 별-4 |
| 5.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5 |

재 무 제 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메뉴 가격표

구 분	상품명	가 격(부가세 미포함, 원)
1	꿀땅콩	6,050
2	뚝딱 떡볶이소스 로제맛	2,510
3	뚝딱 떡볶이소스 매운맛	2,050
4	뚝딱 떡볶이소스 보통맛	2,050
5	양배추절임	4,600
6	직사각쟁반	5,450
7	HOT음료컵	5,820
8	ICE음료컵	3,000
9	IH프라이팬	30,000
10	기름종이	36,360
11	팔라리셋	131,820
12	나무원형접시	7,640
13	데일리풀비타	122,730
14	먹토멜라민접시	10,000
15	간장종기	1,360
16	원형채반(전)	20,270
17	덮밥,빙수그릇	5,730
18	떡볶이그릇	10,000
19	밀폐용기(반찬용)	4,270
20	반죽소스용기(뚜껑포함)	3,550
21	어묵탕그릇	10,910
22	전자레인지찜기(순대)	8,180
23	타원형그릇(순대,핫도그)	6,360
24	화덕용프라이팬	9,450
25	화덕용프라이팬손잡이	14,550
26	커피원두_브라질에스메랄다	82,000
27	커피원두_브라질에스메랄다	18,000
28	소스용기(일회용)	27,270
29	수저세트	21,000
30	식용유분무기	2,550
31	뚝배기	2,090
32	육포세트(훈제,치즈,고추)	57,000
33	인덕션 냄비	19,090
34	전자타이머	8,180
35	집게	3,550
36	과라나식스	131,820
37	커피머신 기기세척 알약	57,270
38	커피머신 석회질 제거 알약	22,730
39	커피머신 우유세척 알약	52,730
40	국자	3,550
41	파워파워비	150,000

42	파전뒤집개	3,550
43	피자보드	22,640
44	피치콜라겐	140,910
45	해남꿀고구마	33,000
46	해남꿀고구마	19,000
47	최상급_두툽쥐포	36,270
48	페스츄리오징어	32,400
49	고소한참기름	12,500
50	데리야끼소스	6,200
51	라면사리	14,000
52	오뚜기밥	1,000
53	오쉐프메이플시럽(디스펜팩)	9,000
54	리얼청굴청	22,000
55	미숫가루	5,727
56	김가루	12,000
57	후리가깨	8,000
58	와플파이믹스(곰표)	25,000
59	리얼_레몬청	19,500
60	리얼_자몽청	22,000
61	핫소스4g	30,000
62	트레비190ml	12,000
63	피자로라	2,909
64	빠삭어포 오리지널	56,000
65	빠삭어포 뿌링잇	70,000
66	빠삭어포 콘소메	70,000
67	빠삭어포 어니언	70,000
68	스므으커피_원두(5kg)	50,000
69	스므으커피_원두(10kg)	90,000
70	스므으커피_원두(1kg)	10,910
71	음료시럽(망고)	21,000
72	음료시럽(블루베리)	20,500
73	음료시럽(복숭아/자두)	20,500
74	음료시럽(자몽)	20,500
75	음료시럽(레몬)	20,500
76	음료시럽(청포도)	20,500
77	싱싱 논두렁	11,090
78	버디 커피 (원두1kg)	10,910
79	버디 커피 (원두5kg)	50,000
80	버디 커피 (원두10kg)	90,000
81	싱싱 자야	11,550
82	싱싱 피자타임	11,545
83	싱싱 라볶이	11,550
84	잉클팝 동글이 보리과자	29,090
85	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	29,090
86	만들초코칩 미니머핀(1.4KG)	15,270
87	키드오 슈퍼초코향 (빨강)	37,550
88	키드오 크림버터향 (노랑)	37,550
89	키드오 버터레몬향 (초록)	37,550
90	추억의쫄드기	29,090

91	빼빼어포 오리지널	17,730
92	빼빼어포 매운맛	17,730
93	월드컵어포 오리지널	17,730
94	삼립 미니약과	32,730
95	초코팅촉	10,820
96	트위스트	11,090
97	정성제과 쫄면	10,640
98	브이콘	17,730
99	네모스낵 불고기맛	61,820
100	네모스낵 매콤한맛	61,820
101	네모스낵 후라이드 치킨	61,820
102	웰그린 자두녹차	12,000
103	웰그린 복숭아녹차	12,000
104	웰그린 레몬녹차	12,000
105	웰그린 블루베리	12,000
106	웰그린 애플망고	12,000
107	브이톡 블루레몬에이드	13,640
108	브이톡 제로 레몬에이드	13,640
109	브이톡 핑크복숭아	13,640
110	청우 델로스오리지널	37,090
111	크리스피 허니눈꽃 쌀과자 920g	27,730
112	남양 초코에몽캔	13,460
113	삼양 별뽕빠이	21,090
114	쌀떡볶이	11,550
115	쫄면어 스모키바베큐	18,640
116	쫄면어 오리지널	18,640
117	쫄면어 매콤달콤	18,640
118	쫄면어 핫불닭맛	18,640
119	과수원 복숭아	6,640
120	과수원 사과	6,640
121	과수원 청포도	6,640
122	보리건빵	13,180
123	짬이야	11,360
124	맛새우칩	11,360
125	왕소라형 과자	11,360
126	매운맛 콘칩	11,360
127	파인 누드계란	25,360
128	글래진 버터 코코넛 비스킷	45,000
129	해피무 초콜릿맛 비스킷	46,820
130	해피무 버터향	46,820
131	피시스낵 스파이스맛	39,550
132	피시스낵 바비큐향	39,550
133	피시스낵 바비큐향&스파이스	39,550
134	초코무초	42,730
135	바바리아 논알콜 맥주(오리지널)	26,000
136	슈프리모 팝콘 카라멜버터	38,000
137	슈프리모 팝콘 초코	38,000
138	슈프리모 팝콘 고메치즈	38,000
139	쥬포	32,000

140	반건조오징어	36,100
141	찰순대	33,000
142	모듬소시지	4,730
143	마요네즈	6,364
144	모짜렐라치즈	12,000
145	와사비마요소스	11,000
146	밀떡볶이떡	6,500
147	오징어 김치전	5,400
148	김치전	4,960
149	오징어 파전	6,570
150	그늘집 얼큰 어묵탕	4,800
151	고르곤졸라화덕피자	37,050
152	불고기화덕피자	37,050
153	페퍼로니화덕피자	37,050
154	메밀전병	10,000
155	뚝딱 떡볶이용 어묵	2,520
156	햇바베큐웁봉	14,900
157	씨앗호떡만두	8,000
158	안동찜닭 덮밥소스	2,850
159	순살닭강정	6,650
160	파인애플샤베트	2,850
161	가래떡	6,910
162	햄김치 덮밥소스	2,590
163	간장돼지불고기덮밥	80,000
164	고추장돼지불고기덮밥	80,000
165	쭈꾸미,갑오징어덮밥세트	90,000
166	갑오징어덮밥	90,000
167	쭈꾸미덮밥	90,000
168	냉동망고다이스	7,000
169	감자채전	5,670
170	납작고기왕군만두	6,550
171	납작김치왕군만두	6,210
172	뚝딱 밀떡	1,710
173	그늘집 어묵탕	4,800
174	통새우한마리만두	4,950
175	눈꽃치즈	17,500
176	크로크무슈	3,200
177	생크림퐁당카스테라	20,500
178	간장돼지불고기덮밥	3,880
179	갑오징어덮밥	4,500
180	고추장돼지불고기덮밥	3,880
181	쭈꾸미덮밥	4,500
182	신의주 찹쌀순대	5,100
183	신의주 야채순대	5,100
184	버터 플레인스콘	44,000
185	초코 스콘	48,000
186	바스크 치즈케이크	7,600
187	떠먹는 티라미수	38,000
188	매콤갈비만두	10,500

189	새우왕교자	11,800
190	물만두	10,900
191	김치제육	9,000
192	명태회무침	3,250
193	BOBs 순살족발	9,850
194	BOBs 순살보쌈	9,500
195	BOBs 보쌈속김치	20,000
196	풍기화덕피자	40,500
197	마르게리따화덕피자	40,500
198	BOBs 유니짜장	2,500
199	BOBs 고기짬뽕	3,250
200	수타식중화면	720
201	할인행사 김치전	3,720
202	초코퐁당카스테라	21,000
203	BOBs 미니김치전	1,900
204	BOBs 모듬전	5,600
205	BOBs 콰트로화덕피자	8,500
206	BOBs 페퍼로니화덕피자	8,500
207	BOBs 마르게리따화덕피자	8,500
208	손맛손질먹태	4,800

가맹점 순회 점검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직영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 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구분	점포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밥스토랑]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용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밥스토랑]의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